

1. 화학사고 유형과 규모에 따른 비상계획의 적용범위
 2. 화학사고에 대비한 훈련·교육
 3. 화학사고 대응 및 사후조치에 관한 기관별 역할 및 공조체계
 4. 화학사고 대응 및 사후조치에 필요한 자원 및 인력·장비등의 동원방법
 5. 화학사고시 피해 최소화를 위한 조치·복구 계획
 6. 그 밖에 화학사고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③ 시장은 매년 1회 이상 비상계획에 따른 훈련을 실시하고 훈련결과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반영하여 비상계획을 수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가. 최근 유해화학물질의 누출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시민의 불안이 커지고 있으나 조례에 따라 5년마다 수립·시행하는 환경보건 및 화학물질 관리계획만으로는 예고 없이 발생하는 화학사고 대처에 한계가 있음
 - 나. 이에 화학사고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비상대응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화학사고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화학사고 비상대응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함(안 제7조의2 신설)

◆ 서울특별시조례 제6998호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박 원 순 인
2019년 1월 3일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의2의 제목 “(지진대피소 안내표지판 등의 설치)” 를 “(안내표지판 등의 설치)” 로 하

고, 같은 조 제1항 전단 중 “시장은 지진대피소 안내표지판을 해당 지진대피소나” 를 “시장 및 자치구청장은 지진대피소·무더위쉼터·한파쉼터 안내표지판을 각각 해당 시설이나” 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지진대피소의” 를 “지진대피소·무더위쉼터·한파쉼터의” 로 하며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무더위쉼터와 한파쉼터의 경우는 이용하는 시민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운영시간과 불편신고 요령을 게시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가. 폭염 및 한파 등에 대비한 대피소 위치 및 운영 관련 정보 게시의무, 시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 등 활용방안을 명시하여 이용자들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지진대피소 뿐만 아니라 무더위쉼터·한파쉼터에 안내표지판을 설치 또는 부착(안 제 43조의2)

◆ **서울특별시조례 제6999호**

서울특별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박 원 순 인
 2019년 1월 3일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하를 안전하게 개발하고 이용하기 위하여 지하안전관리체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반침하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고 시민의 안전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하”란 개발·이용·관리의 대상이 되는 지표면 아래를 말한다.
2. “지반침하”란 지하개발 또는 지하시설물의 이용·관리 중에 주변 지반이 내려앉는 현상을 말한다.
3. “지하개발”이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3호에